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040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의 일부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 사업은 위험한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를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지역주민(일부 학부모 포함) 800명 동의를 받은 ‘2018년 서울시 시민공모사업 ‘이며 ‘2018년 교육부-행정 안전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대상지’ 로 선정된 사업임
- 나. 동 사업은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다. 사업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 해당 보행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인근 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보·차도 분리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보행로 개선을 통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학교부지 일부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 공간 축소 등의 사유로 일부 학부모의 반대가 있으나, 교육지원청-구청-초등학교-유치원이 공동 협력하여 학부모와 학교,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항을 사전 조율을 통해 협약서에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유치원이 상생하는 마을학교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개요

-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19-1(서울경동초등학교, 서울경동유치원)
- 면적 : 20,092㎡
- 소유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사업 개요

-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19-1(서울경동초등학교, 서울경동유치원) 중 일부
-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차도 분리와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주체 : 성동구청(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규모 : 보행로 설치
- 사업내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사용 면적(㎡)	사업예산
성동구 성수동1가 19-1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용지	285㎡* (1.5m×190m)	7억 이내

※ 토지사용 면적 및 사업예산은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협의·확정 예정

※ 구청장은 사업예산 중 교육공간 축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오래된 수목 이식 등 교육재산 보호에 책임을 다하며 예산 초과 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 협약서 명기

- 사업기간 : 2020. 12. ~ 2021. 9.

○ 기타사항

-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신설
- 학교의 교육활동 등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해당토지의 활용 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성동구청이 부담함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18. 3.26.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민공모

- 2018.11.19.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지침 통보
(경동초등학교 대상사업지 선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2018.12 ~ 2019.12. 유관기관 간담회 9회, 성동구청 설명회 및 간담회 4회, 학부모 설문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실시 ('19년 기관별 각1회, 2019.3.22.~3.25)
 - 학교구성원의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 추진 보류
 - ※ 초등학교 설문 및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설문 52%(557명) 참여 중 87%(483명) 찬성, 9%(49명) 반대
사업추진의견: 경동유치원 찬성 시 찬성(조건부 찬성)
 - ※ 유치원 설문 및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설문 97%(124명) 참여 중 5%(6명) 찬성, 95%(118명) 반대
사업추진의견: 사업추진 반대
- 2020.4~9.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사업 요구민원 국민신문고 접수처리(28건)
- 2020.8 ~ 2020.10. 관계기관 회의(2회) 및 경동유치원 학부모 간담회(1회), 학부모 설문조사 (기간: 2020.10.6.~10.8)
 - ※ 초등학교 설문결과
설문 49.4%(378명) 참여 중 91.5%(346명) 찬성, 8.5%(32명) 반대
 - ※ 유치원 설문결과
설문 84.3%(102명) 참여 중 27.5%(28명) 찬성, 72.5%(74명) 반대
- 2020.10.12. 학교부지 활용 보행로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사전 조율 (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성동구청-서울경동초등학교-서울경동유치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추진 필요성에 학교장, 유치원장이 동의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학교와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오래된 수목을 보존하는 자연친화적 숲길 보행로를 조성하기로 함
- 2020.10.13.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보행로 개선사업 추진 관련 영구시설물의 축조계획서 제출(성동구→교육지원청, 학교)

- 2020.10.13. (교육지원청-성동구청-서울경동초등학교-서울경동유치원)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라. 향후 추진일정

- 2020.12. 보행로 사업 관련 토지 사용허가(경동초등학교)
- 2020.12.~2021. 3. 보행로 설치 및 교육환경 개선 실시설계(성동구)
학교구성원과 협의하여 교육공간 등 개선 요구 반영
- 2021. 9.까지 보행로 설치 및 교육환경 개선 시행 및 준공(성동구)
학생(원아)의 학습환경을 고려한 일정 등 협의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2020.10. 13.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서울경동초등학교, 서울경동유치원 협약 체결)

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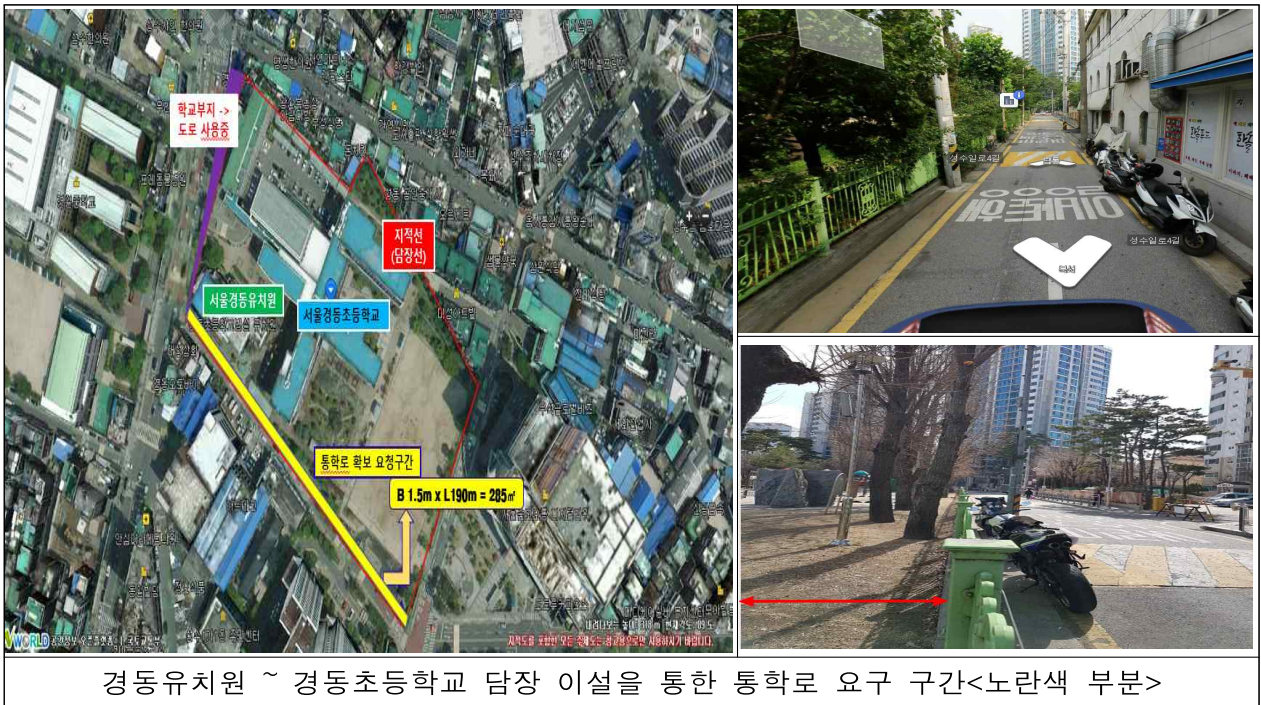
o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기본구상도(안)



※ 보행로 설치 면적 등은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협의·확정 예정

- (목 적)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을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보행 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예 산) 7억 원
- (방 법) 보차도 구분한 보행로 설치(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보행)
- (사업시행) 성동구청

o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서울경동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 서울경동유치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 라 한다) 소관 행정재산인 토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9-1)의 기존 학교담장을 이설하여 학교 및 유치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로” 시설을 조성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 원장은 학교 및 유치원 부지를 활용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성실히 노력하며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의 대상) ①보행로 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구분	소유자	지목	전체면적 (㎡)	보행로 시설 사용 면적(㎡)	사업예산
성동구 성수동1가 19-1	토지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용지	20,092	285㎡ (1.5m×190m)	7억 이내

②토지사용 면적 및 사업예산은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협의·확정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예산 중 교육공간 축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산 보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제4조(안전 관리 의무) ①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시행 설계단계부터 학생 및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제5조(조건 및 역할분담) ①교육장과 구청장은 학교 및 유치원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적극 협력한다.

②교육장은 시의회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구청장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사업을 추진한 토지에 대해 매입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승인한다.

③교육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로 시설의 축조승인 및 사용료 면제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학교장 및 원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⑤구청장은 보행로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의 학생(원아)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설계 과정 및 공사착공 전·후 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학교장,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사전 설명 등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구청장은 교특회계 소관 토지의 보행로 시설 조성에 따라 축소되는 교육공간의 학교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추가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및 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공통 사항

- 숲길 보행로 조성으로 자연을 재생하는 등 모든 수목의 훼손 최소화 (특히 1913년 설립된 학교로 100년 이상 된 나무 다수 있어 이식 등 보양을 철저히 하되 고사목 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폐기 또는 동일 수종으로 보식)
- 한전주·통신주는 현 위치에서 이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치원의 경우

- 1층 교실(2실) 피해에 따른 최소한의 학교부지 활용 및 교육환경 개선
- 훼손되는 유치원 시설(놀이터, 산책길)의 재배치와 정·후문 등 위치 변경

- 학부모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대체 시설

㉔ 초등학교의 경우

- 학교담장과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 재배치 및 조경개선
-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대체 시설

⑦구청장은 보행로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학교 및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해당토지의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 구청장, 학교장, 원장 간 상호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⑧제7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경우 구청장은 공사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비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⑨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로 보아 면제할 수 있다.

⑩위 조항을 포함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제6조(유지 및 관리의무) ① 구청장은 보행로가 존치하는 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인적·물적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는 등 안전(민원포함)에 만전을 다한다.

제7조(정보교류) 교육장, 구청장, 학교장, 원장은 본 협약 상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 현황 및 정보 등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한다.

제8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본 협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영구시설물 축조는 서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부결될 경우 재협의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 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당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정원오



서울경동초등학교
교장 이종렬



서울경동유치원
원장 고문영